

요약본

# 2023 북한인권보고서

2023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본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3 북한인권보고서

2023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요약본



1. 시민적·정치적 권리	08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1
3. 취약계층	30
4. 특별사안	36

---





#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요약 정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제반실태를 종합해보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규약 하에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금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일부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신문과정에서 구타, 고정자세 유지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공개처형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형수와 목격자의 입장에서 모두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나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교회소와 노동단련대에서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정해진 시간을 넘어 구금자가 노동에 투입되고 있으며, 재판소의 선고가 아닌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노동교양처벌을 받고 건설현장에 동원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자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체포하지 않도록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형법 등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실,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난방, 급식, 위생 등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수감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수감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가혹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인권유린을 하지 말도록 하는 방침이 하달되어 구금환경이 나아지고 가혹행위가 줄어드는 등 개선된 부분도 있다는 증언이 일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여행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여행증명서, 숙박검열 등의 제도로 인해 주민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평양 등 특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승인이 필요하며, 강제이주조치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민반 제도와 조직 내 생활총화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반종교 교육 등을 통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반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다. 북한 당국은 특별전

담조직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나 유포를 강력하게 통제 해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이 보장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성분과 계층을 바탕으로 주민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 계층은 거주지역과 직업 배정, 승진, 이직, 대학진학 등에 있어 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비밀처형이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방역조치 위반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신 부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북한에서는 신문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백을 강요받은 경우가 다수였고, 자백



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방식의 하나로 구타 등 고문이 가해졌다고 한다. 한편 구금시설에서 구타행위를 금지하거나 신문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으나 구타행위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되었는데 이는 처형을 당하는 사람과 이를 목격하는 사람 모두에게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공개처형은 운동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총살의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여기에 학교, 기업소, 인민반 등을 통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집단 동원되었다고 한다.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실시된 북한당국에 의한 생체실험에 대한 증언들도 수집되었다.

북한에서는 형 집행시설인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에게 부과되는 노동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감자가 아프더라도 계획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할당량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폭행이나 처벌이 있거나 면회를 제한하고 면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북한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결정으로도 노동부과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처벌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높은 강도의 노동과 열악한 구금환경 때문에 기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출소일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기실, 여행자·비법월경자 집결소 등 임시수용시설에서도 강제노동에 수시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송환되어 거주지 이송과정 중 비법월경자 집결소에서의 노동력 동원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없이 기상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노동해야 했다는 진술이 많았다. 일반주민들도 인민반·직

장·학교 등 사회조직을 통해 지역의 건설현장이나 농촌동원 등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별로 동원된 횟수는 다양했으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구성된 조직에 따라 ‘여맹돌격대’, ‘대학생 돌격대’, ‘가족돌격대’ 등으로 불리우며 각종 건설현장 등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자의적·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의견표명, 종교행위 등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체포·구금하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체포·구금하였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체포당시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통고받지 못했으며, 구속된 후에 구속사유와 장소를 가족에게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다수였고, 법정 최대 구금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종교행위, 체제비판, 인신매매 등의 다양한 사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인 강제실종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북한 내 형 집행시설의 구금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금공간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매우 비좁으며 한 공간에 수용되는 인원이 비교적 적은 곳이라 해도 대부분 유엔 최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이불이나 장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제공되는 식사의 양과 질도 낮은 편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면식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영양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물

과 세면용품도 부족하며, 구금기간 중 제대로 씻지 못하여 빈대, 머릿니 등 해충도 있었으며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시설 내 악취가 심하였다는 진술도 많았다. 또한 수감 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수용실 안에서 고정자세를 취해야 하고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으며 수감자가 자백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같은 굴욕적이고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들도 다수 수집되었다. 면회와 서신은 제한되며 미결수와 기결수, 미성년자와 성년의 분리수용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소지품 검사를 위해 나체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체강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체·체강검사 시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실시하며, 남성 계호원이 자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성폭력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강제낙태나 임신부에 대한 구류구속 금지와 형벌집행 정지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당국의 지침이 하달되어 폭행행위를 가한 기관원에 대한 처벌이 있거나 구금환경이 개선되는 등 일부 구금시설에서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진술도 수집되고 있으나,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여행증 없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시·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급기간을 단축하고자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거나 여행증 없이 이동을

시도했다는 증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평양시나 국경지역 등의 경우에는 여행증 발급이 더욱 까다롭고 발급을 위해 더 많은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행증을 소지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여행증 검사는 각 지역의 구간별로 존재하는 초소나 열차 등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단속을 당하더라도 대부분 뇌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북한주민은 여행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곳에 숙박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숙박자는 숙박검열의 단속 대상이 되는데, 단속될 경우 뇌물을 주고 처벌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속 과정에서 불순녹화물 시청, 무허가 전자제품 사용 등 다른 위법행위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주민은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시·도로 이전하거나, 평양 등 특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기가 어렵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사유·남한정보 접촉·마약 밀매 등을 이유로 강제이주조치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이주는 현재 거주지의 이용허가를 취소·박탈하고, 강제이주 지역에 주거를 새롭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함께 이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북한주민은 출국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과 같은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소지하지 않고 국경을 이동한 경우에는 국경비법출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경우 처벌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는데, 중국 체류기간이 매우 짧아 뇌물을 제공하거나 처벌 없이

풀려난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 체류기간이 긴 경우에는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도 징역형의 성격을 갖는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국가·반민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법원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활동이 진행된다’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개재판 제도가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본보기를 위해서 수백 명 앞에서 현지공개재판이 실시된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공개폭로모임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변호권, 진술거부권, 상소권 등 피고인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인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변호인이 재판에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재판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당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단위의 인민반 제도는 주민을 감시하는 가장 하부조직이며, 인민반장을 비롯하여 당국의 지시를 받은 통보원, 정보원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동향,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하는데, 탈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은 더욱 엄격한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고 한다. 주민들은 학교, 직장, 군대, 인민반, 여맹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노동자나 유학생까지도 소속된 조직에서 주 1회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하는데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며 불참 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외부정보 접촉, 밀수품·전자제품 단속 등을 위해 가택수색도 시행되고 있는데, 숙박검열을 할 때 함께 수색하기도 하며 영장제시 등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순녹화물이 있는지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길거리나 대학 등에서 수시로 휴대전화 검열을 하며, 주민들의 통화를 감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서신검열, 초상휘장 검열, 복장검열 등을 정기·수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검열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사상교육은 유년기부터 음악, 미술, 체육활동의 형태로 시작되어 소학교부터 전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군대, 직장 등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회, 강연회의 형식으로 계속되고 인민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급 기관·기업소·학교 등에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연구실이, 각 시·도에는 혁명사적관과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설치되어 있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요받는다고 한다. 모든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겉옷에 이들의 초상휘장을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외에는 어떠한 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반이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연합지휘부 등이 비사회주의 행위들을 단속하고 처벌한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명문상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종교탄압 정책으로 북한주민 대부분이 종교를 접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나 조직생활에서 반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성경 소지나 선교 활동을 이유로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는 증언들도 수집되고 있다. 미신행위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미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노동교화형을 받거나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나 검열에 의해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제한받고 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언론·출판 내용이 정해지고 있으며,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트릴 수 있는 출판물은 회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당국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나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말반동’이라고 하는데, 말반동을 이유로 체포되어 행방불명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등 구체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다는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정보는 주로 유학생, 해외노동자, 장사꾼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109연합지휘부라는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가택수색, 길거리 불시검문 등으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뿐만 아니라, 외부정보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외부정보로 단속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뇌물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필요한 뇌물의 액수가 늘어났다고 하며 최근에는 공개비판을 받거나 노동교화형 등 처벌받은 사례도 다수 수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학생, 노동자, 농민, 군인, 주부 등 신분과 관계없이 관제집회나 군중행사에 1년에 수차례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당국의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일, 북한정권수립일, 노동당 창건일 등 당국의 행사와 각종 궤기대회에 집단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동원에 불참하면 당에 대한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비판받기 때문에 대부분 불참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학생들은 집단체조에 동원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오랜시간 동안 연습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는 조직생활이 강제되고 있는데,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을 시작으로 청년동맹, 직맹, 여맹 등 당국이 허용하는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조직의 가입과



해제의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사에 따른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의무적으로 가입된 조직에서는 지원물품 납부, 노력동원, 강연회와 학습회 참여, 생활총화 등 수행해야 할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불참할 경우 비판받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지만, 일정금액의 돈을 내고 불참하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대표는 최고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이다. 선거는 불참할 수 없다고 하며, 실제 주민들은 선거에 불참하거나 반대투표 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거를 주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어 찬성투표 한다는 것이 일관된 진술이었으며, 반대투표 방법을 모르거나 반대투표한 경우를 들어본 경우도 없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피선거권도 제한되고 있는데, 성분, 당원 등 당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대의원 후보로 단일 추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보로 결정되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한다.

북한은 ‘성분’ 또는 ‘토대’를 기준으로 모든 주민들을 분류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학진학, 노동당 입당, 직업선택 등 주민의 권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평양시와 지방,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가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시 안에서도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한다. 대학입학에서도 성분이 중요하며 직장배치, 이직, 직종변경, 승진에도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으며, 뇌물, 인맥 등을 통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비롯하여 국군포로·이산가족·재일교포 귀국자·중국 연고자 등이 받는 차별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각각 차별의 정도는 다르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의 감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당이나 대학진학이 어렵거나 '당일꾼'을 할 수 없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요약 정리

북한주민들은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식량권의 경우 북한 주민들은 충분한 식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계층이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식량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평양과 지방과의 차이, 권력층 우선배급, 기업소별 배급량의 차이 등 불평등하고 충분하지 못한 배급현황도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상황을 더하고 있다.

건강권과 관련하여서는, 예방의학의 경우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기 필수예방접종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핵과 같이 전염력이 높은 전염병은 당국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과 별도의 관리가 없다는 상반된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의료체계의 근간인 무상치료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민들이 공적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사적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면서 북한주민들은 건강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민의 직장을 강제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제대군인이나 졸업생들을 집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보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출근만 하고 사적 경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파견노동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하루 10시간부터 심한 경우 17시간까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보수의 경우에도 국가계획분과 회사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대가는 매우 적었으며 소득의 80%를 계획분으로 내야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아울러 해외파견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에서와 같이 사생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무상의무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학습에 필요한 제반 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 운영비용을 전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 또한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진학에 차별이 있으며 경제력과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 격차 등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다. 교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로연금과 노동능력상실 연금의 경우 지급액수가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가족 연금과 각종 보조금의 경우에도 제도와 달리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는 성별, 연령, 직종, 노동 강도 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배급하는 제도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에

서도 당·군·보위부·보안성 등 핵심계층에게만은 배급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는 식량의 자력조달제 확대로 ‘기업책임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배급제도가 ‘국가배급’과 ‘기업소배급’으로 나뉘었다. 국가배급은 아동, 사회보장대상자를 비롯하여 체제보위집단과 평양시 등 일부지역에 배급되는데, 특히 체제보위집단과 평양에는 배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배급대상자라고 알려진 교원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소속된 병원에 따라 배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 배급은 기업소의 상황에 따라 배급량이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 외화벌이 기관은 대체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양을 배급하는 기업소도 많았으며, 배급을 전혀 하지 못하는 기업소도 있었다. 북한의 식량배급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토지 경작, 가축 키우기, 장사, 밀무역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로 북-중 합작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연료와 전기 부족으로 광산과 탄광의 가동이 멈추기도 했으며, 휘발유 등 가격이 상승했다는 다양한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소규모 밀무역 비중이 큰 국경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예방의학제도와 무상치료제도에 의해 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은 학교나 진료소를 통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위생선전 사

업과 예방접종 등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전염성이 높은 결핵과 관련하여서는 당국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과 별도의 관리가 없었다는 증언이 함께 수집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방역법을 제정·개정하였는데, 국경을 봉쇄하고 해외입국자를 45일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방역검열에 단속될 경우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북한은 호담당의사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로 위생선전사업,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호담당 의사를 만난 적도 없거나 의사들이 사적 경제활동을 하느라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의료체계의 근간은 무상치료제이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대체로 무상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의료진에게 현금, 현물 등의 사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또한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약품, 소모품, 의료기기 가동을 위한 연료비 등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는 다수의 진술이 수집되었다. 북한의 의료장비와 시설은 매우 열악한데, 의료물품이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출신성분과 경제력에 따라 전문병원이나 고급의료서비스 등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병원에는 일정계급 이상의 기관원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설치된 ‘진료과’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고가의 간부용 약품과 입원 등 비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인맥이나 뇌물도 의료서

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돈만 있으면 평양의 전문병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불법적인 사적 의료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없다는 진술이 수집되고 있으며, 마약도 의약품 대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수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전력 부족으로 수도물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거나 강이나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깨끗하지 않은 수도물로 인해 최근에는 생수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증가했다는 증언도 수집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직장을 배치하고 있는데, 출신성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인맥과 뇌물을 이용하여 이직하거나 기피대상 직장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점차 직장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장, 탄광과 같이 기피하는 직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적, 집단적으로 무리배치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는데 무리배치에 빠지기 위해서도 인맥과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은 무직이나 결근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단속은 보통 거주지나 직장에 상주하는 담당안전원이 하지만, 무직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연합조직도 있다고 한다. 무직이나 결근에 단속되면 노동교양 처벌을 받는데, 인맥이나 뇌물을 통해 단속과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소에서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일부 노동자들은 매달 기업소에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8.3

노동자'로 지내며 생계를 위한 사적 경제활동을 한다고 한다. '8.3 노동자'로 편성될 경우 단속에서 제외되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수익금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 보수는 기업소마다 상이했으나, 일부 외화벌이 기업소를 제외하고는 매우 적었으며 각종 납부금을 내고나면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근로시간과 휴식·휴가에 대한 보장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급 등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격대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격대는 대규모 건설을 위해 조직되는데, 무리배치나 차출 등으로 강제 배치된 경우와 입당·대학진학 등을 위해 자원한 경우로 나뉜다. 돌격대원에게 보수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작업시간이 하루 10시간을 넘기는 것은 보통이었고 영양부족 상태가 되기도 하여 도망치는 돌격대원이 많다고 한다. 돌격대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돌격대에 자원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강제동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돌격대를 기피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사례비를 주고 대리 입대시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해외파견노동자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에 파견되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돌격대와 달리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지원한 사람들이 대다수로 출신성분을 비롯하여 가족관계, 평판 등을 조회하고 수차례 간부 면담을 통해 선발하



는데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근로 환경은 노동자의 기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급은 기업소마다 달랐으나, 대체로 매달 지급되지 않고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파견 종료 후 북한으로 돌아갈 때 일괄 지급한다고 한다. 해외파견노동자들은 국가계획분·당비·회사운영비 등을 바쳐야 하는데 파견된 나라에 따라서는 대사관 운영비까지 보수에서 차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는 매우 적었으며 소득의 80%를 계획분으로 내야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해외파견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부터 심한 경우 17시간까지 휴일 없이 장시간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안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는 등 생활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와 같이 사생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함께 파견된 보위원은 노동자 중에서 정보원을 두고 노동자들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고받고 감시했다고 한다. 외부정보 접촉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는 금지되며,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스마트폰은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보위원들은 스마트폰 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수시로 검열했는데, 스마트폰 소지로 단속 될 경우 대부분 벌금을 내고 무마되었으나 한국 영상물 시청이 단속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총화도 매주 실시되고 있는데,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그 시간에 노동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보통교육법에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명목의 교육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는 ‘교과서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과서가 모든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학년을 마치면 다음 학년에 교과서를 물려주어야 했다는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 소학교부터 학교운영비, 꼬마계획 등의 비용을 내야했다는 진술이 꾸준히 수집되고 있는데, 학교시설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학교꾸리기 비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돈이나 물품은 교원에 의해 사실상 강제되고 있었는데, 비용을 내지 못하는 경우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비판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며 대학입학에서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이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에도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분·지역·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도 열악한데, 학교시설의 현대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양호실, 도서관, 위생시설이 없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잘사는 학부모의 원조를 받거나 자신의 텃밭에 학생을 동원시키고 있어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교육보다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고 있으며 교과과정에 실험사격을 하는 군사훈련을 편성하여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로는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 연금, 유가족 연금 등 생계가 결핍된 경우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금의 성격을 지닌 보조금 제도가 있다. 연로

연금은 근속노동연한을 채운 자 중 일정연령이 지난 경우 지급되는데,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한다. 노동능력상실 연금은 산업재해 등으로 6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 지급되는데 뇌물을 주고 사회보장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상이 되어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매우 적었다고 한다. 근로자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가족 연금의 경우에도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각종 보조금의 경우에도 제도와 달리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은 노인보호 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로원 등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부양자가 있어도 입소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부양을 회피하기 위해 인맥이나 뇌물을 통해 부모를 시설에 입소시켰다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 3. 취약계층

#### 요약 정리

취약계층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장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은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탈북여성의 인권 침해 상황도 심각한데 특히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하게 된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구금시설에서 나체·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아동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지만 북한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기도 하며, 한국 영상물 시청 등 각종 사유로 17세 미만 아동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가정과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 당국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학교에 의한 각종 노동에 동원

되고 있으며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여러 노동현장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그 존재 자체를 불명예로 인식하는 것처럼 부정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장애인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남성을 여성보다 우선시하는 인식이 남아있으며, 실제로 가정이나 사회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으며, 신고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돌격대 등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신고하더라도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로 인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무상치료원칙에 따라 출산이 무료이며, 산모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당국의 제도적 노력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산전검진 등 의료지원이나 출산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

한은 산전산후 휴가보장, 다자녀 어머니의 노동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산 전후기간 동안 휴가나 보조금을 규정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벌기위해 탈북한 많은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신매매되는지 모르고 탈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신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탈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으며, 주로 중국남성과 매매혼을 당하였고 유흥업소 등에 매매되기도 하였다. 탈북 후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에는 이송과정에서 나체·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인신매매된 피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로서 보호조치를 받거나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국경비법출입죄’로 노동교화형 등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처벌받은 후에는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특별한 보호대상이며 폭력이나 노동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아동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아동을 공개처형했다는 사례가 수집되고 있으며, 아동을 체포·구금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구금 중 성인과의 분리수용 없이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아동이 폭력을 당한 사례도 꾸준히 수집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을 훈육으로 보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교사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있었는데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꼬마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벌당한 경우도 있었다. 아동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관계자들로부터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탈북과정에서 미성년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학생들은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방과 후 노동에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주로 농사철인 봄, 가을에 오전수업만 받고 오후부터 해질 때까지 인근 농장의 농사일에 빈번하게 동원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원 횟수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도 강해진다고 한다. 고급중학교 때에는 교과과정 내에 ‘농촌지원 활동’이 있는데, 학교마다 동원기간이나 횟수는 상이하나 몇 주 동안 농장원들 집에서 숙식하며 하루 8시간 이상 농사일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또는 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업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이 돌격대에 차출된 경우도 있는데, 북한 당국의 아동노동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육아원, 애육원 등 아동보호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퇴소한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취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집된 증언에서도 애육원이 신축되거나 현대식으

로 정비되는 등 아동보호시설의 양육환경은 전보다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졸업생의 상당수가 돌격대나 공장노동자로 강제배치되고 있다는 진술이 수집되고 있어 대학에 진학하거나 희망에 따라 직장배치 된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아동(꽃제비)과 관련하여서는, ‘꽃제비 상무’라는 단속기관에 단속된 꽃제비들이 수용시설에 보내지는데 수용시설이 열악하고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하여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이 수집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은 사람들로 부터 회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들이 거주·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결혼이나 출산을 제한하고 ‘난쟁이 마을’ 등을 만들어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곳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에서는 장애인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강제이주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평양에서도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치료, 교육, 근로 등의 권리는 북한의 주장만큼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하며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도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위한 시설은 없었다고 한다. 장애인의 치료나 재활을 돕는 교정기구가 생산되는 공장이 있지만 당국이 무상으로 치료나 재활, 의료기기를 지원한 것은 없으며 돈을 지불하고 교정기구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농아학교’, ‘맹인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이 제공된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특수직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경로동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수는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장애인이 일반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북한에서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영예군인 장애인들은 당국의 지원이나 사회보장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은 특류,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데 ‘특류’ 영예군인의 경우에는 식량이나 생필품 등이 부족함 없이 지원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으나, ‘특류’ 영예군인 이외의 영예군인들은 지원받은 내용이 생활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 4. 특별사안

### 요약 정리

정치범수용소의 수용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되었다. 정치범수용소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수용민의 처우가 열악하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정치범수용소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직접 목격한 사례가 드물어 수용소의 현황과 수용자 처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국군포로·납북자의 경우에도 수집 사례가 특히 적어 상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북한에는 정치범을 따로 수용하는 곳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되었다. 수용소는 대체로 일반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수용민의 도주가 쉽지 않은 깊은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리’나 ‘노동자구’를 합쳐놓은 크기로 규모

가 큰 것으로 보인다. 수용 사유는 성분 문제, 말반동 등 김일성·김정일 권위훼손과 관련된 문제, 간첩행위,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이나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와 관련된 문제,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인신매매나 한국거주자 통화 등 한국관련 문제 등이라 하며, 대개 가족까지 동반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을 수용할 때에는 대체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보위부에 의해 체포·실종되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음을 짐작하거나 기관원에 의해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수용자 처우는 수용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수용자 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중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경우 공개재판을 거쳐 처형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수용소 주민을 처형장에 동원한 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하였지만, 비공개 처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용민은 대부분 광산에 배치되어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면되어 해제민이 되어야 갱안에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한 작업반장이나 밭파공 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용소에서는 보통 하모니카집이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주택은 비좁고 노후화가 심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가족과의 동거는 수용소 내에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녀의 교제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다만 일반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하였다는 진술도 함께 수집되어, 수용소별로 생활통제를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나 교육도 수용민과 기

관원 및 가족에 대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수용민에게 공급하는 의약품의 양이 매우 부족하였고,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수용민과 기관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일부 교육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출신 등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군포로를 북한에서 목격하거나 이들의 생활에 대해 특문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군포로는 탄광이나 농장에 무리배치 되어 일하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경북도 무산군과 함경남도 단천시에는 수십 명의 국군포로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북한은 국군포로를 ‘43호’ 대상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도 감시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대학진학, 직장배치와 승진, 입당, 군 입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군포로는 허가를 받고 이동하더라도 담당보위원 등에 별도로 보고를 하여야 할 정도로 감시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대학입학, 군입대, 노동당 입당 등이 불가능하였고, 탄광이나 농장에 집단으로 배치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납북자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납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용군으로 납북되어 차별과 감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전시동원납북자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였지만, 많은 수가 광산에 무리배치 되어 노동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인민반

등을 통해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납북자에 대한 수집 사례는 특히 적어 상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이산가족 실태는 월남자 가족에 대한 실태와 월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월남자 가족과 월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이 일률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차별의 정도를 달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남자 가족은 ‘당일꾼’, ‘법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진술과 ‘행정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군관학교나 보위대학 등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가족·친척 중 월남자가 있어 진학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월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당일꾼’, 군 관련 직장 근무, 특정 대학 입학 등이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남한의 가족과 만나고 난 뒤 자녀들까지 감시와 차별이 생겼다는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 2023 북한인권보고서 **요약본**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전화** 02-2135-7059  
**팩스** 02-2135-7063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250503-000001-14

# 2023 북한인권보고서

2023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